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9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령화 시대에 맞춰 통장의 연령 제한을 상향하고 오피스텔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통장 모집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며,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통반의 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나. 통반의 명칭 및 구역 (안 제3조)
- 다. 통장의 임기 (안 제4조)
- 라. 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5조)
- 마.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안 제6조 ~ 제7조)
- 바. 통반장의 임무와 준수사항 (안 제8조 ~ 제9조)

- 사. 반상회 및 통반장회의, 수당 및 사기진작 등 (안 제10조 ~ 제13조)
- 아. 통장 신분증 발급 (안 제14조)
- 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안 제15조 ~ 제2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및 제8조 제1항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1통은 6개 반 이상 14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

③ 1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④ 제2항과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통장은 7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③ 통장이 임기만료 전 위촉해제 되었을 때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 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5조(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동장은 통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심사를 위해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동 행정자치팀장

2.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장

3. 그 밖에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6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단,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의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 포함

2. 해당 통에서 3년 이상의 반장 경력자와 봉사활동 우수자 우대

3. 출산 장려를 위한 3명이상 다자녀 가정 우대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제7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제)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촉해제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통·반 조직을 통합·폐지한 때

3.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의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경우

5. 심신장애나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7. 제8조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2.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 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

3. 구정소식지 등 홍보물의 배부 등 행정시책 홍보 및 협조
 4. 지역의 민원, 건의사항, 주민 공동 관심사항 등 주민여론 보고
 5. 통·반 내 순찰과 수방, 제설, 위험시설물 확인 등 주민 불편사항 신고
 6. 재해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7.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협조
 8. 적십자 등 지역 사회단체 협조
 9. 복지대상자 생활 실태 파악, 틈새 계층, 위기 가정 발굴과 복지도우미 역할
 10. 국가위기 발생 시 주민 홍보 및 계도
 11.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2.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청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준수사항)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공무의 기록 등을 공무 이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② 통·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통·반의 운영

- 제10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거나 영업장을 운영 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문화, 경제, 골목반상회 등의 주제별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제공 및 실비 수당 등)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동 주민센터의 공문서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사기진작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의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 및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지원, 숙식비,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공 통·반장을 대상으로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문화재 탐방,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통장신분증 발급)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통장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통장신분증의 규격·기재사항 및 사용·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통장자녀 장학금

제15조(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구청장은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 1명에 대하여 1회에 1명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통장자녀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7조(장학생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18조(장학생 선발)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5.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통장의 자녀

제19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임기만료, 전출, 사직 등으로 통장 직에서 위촉 해제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② 통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